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당성 평가 내용,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 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

나.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

다. 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안 제38조제5항 신설)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위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대안경로
2. 경쟁노선
3. 통행시간
4. 통행량
5. 잠재수요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3(중전의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4(중전의 제6조의3) 제4항제2호 중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5(중전의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3제2항”을 “제6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국</u> <u>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u> <u>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u> <u>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u> <u>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u> <u>함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u> <u>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u> <u>한다.</u> <u>1. 대안경로</u> <u>2. 경쟁노선</u> <u>3. 통행시간</u> <u>4. 통행량</u> <u>5. 잠재수요</u> <u>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u>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u>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u> <u>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u> <u>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같</u> <u>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u> <u>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u> <u>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u> <u>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법 제5조</u>	<u>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u> <u>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u> <u>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u> <u>-----</u> <u>-----</u> <u>-----</u> <u>-----</u> <u>---</u> ② ----- <u>법 제5조의</u>

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
조의2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⑤ 법 제5조의2제4항 전단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
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6조의3(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 ② (생
략)

3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5
조의3제2항-----

-----.

-----.

⑤ 법 제5조의3제4항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삭 제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⑤ (생 략)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6조의5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

④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조의3제3항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
-- 제6조의4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6 (현행 제6조의5와 같음)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1. -----

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생략)

<신설>

나. ~ 머.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 ④ (생략)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다. ~ 버. (현행 나목부터 머목까지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⑤ ~ ⑦ (생 략)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 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